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G06-260119-001
평가금액	200,970,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감정평가법인 공감 대전세종충남지사 / 황효숙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33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감정평가법인 공감 대전세종충남지사 / 황효숙	eyJhbGciOiJFUzI1Nils	2026-02-02 17:22:00.0
대표	감정평가법인 공감 대전세종충남지사 / 조규창	eyJhbGciOiJFUzI1Nils	2026-02-02 17:21:00.0
심사자	감정평가법인 공감 대전세종충남지사 / 조규창	eyJhbGciOiJFUzI1Nils	2026-02-02 17:22: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건명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232-6 외 토지(역삼세무서 2025-14855-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평가서번호	G06-260119-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공감(주) 대전세종충남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2호 (우 34068)
대전세종충남지사 : TEL. 042-710-7012 FAX. 042-710-7013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황효숙

황 효 숙



감정평가법인 공감(주) 대전세종충남지사 지사장 조규장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억구십칠만원정 (₩200,970,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목적	공매(국세, 지방세)		
채무자	-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영진 (역삼세무서 2025-14855-A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6.01.30	2026.01.23 ~ 2026.01.30	2026.01.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928	토지	2,928	-	200,970,000
	이		하	여	백	
	합계					₩200,97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趙奎章			(인)
	조규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기호(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소재 '마금2리다목적회관' 남서측 원거리, 기호(2,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소재 '몽산포항'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의뢰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현황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근흥면 마금리	1232-6	임야	계획관리	733.0	22,600	-
2	남면 몽산리	628-12	임야	계획관리	1,127.0	31,900	-
3	남면 몽산리	628-18	임야	계획관리	1,068.0	41,500	-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6년 01월 30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6년 01월 23일 ~ 2026년 01월 30일이며, 대상물건의 존재여부, 공부 및 제시목록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하였으며,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기타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나. 본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 현황도로 등은 지적도 및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목적에 의해 확인한바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함.

다. 기호(1,2) 토지는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하는바 공매 진행시 도로의 성격, 권리 및 사실관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라. 본건 지상에 자연생 입목 및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활잡목 등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함께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마. 본건 평가시 인용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의 지번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별표(*)로 표기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나. 토지의 감정평가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산정하였음.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 개요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2)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태안군>

(공시기준일: 2026. 1. 1.)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근흥면 마금리	1249-3	1,523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2,100
B	남면 몽산리	산125-5	6,745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	4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 충청남도 태안군 계획관리지역 >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계 산 식
2026.01.01~2026.01.30	0.069% (1.00069)	충청남도 태안군 (26.01.01~26.01.30) (계획관리) 2025.12.01 ~ 2025.12.31 : 0.071 $(1 + 0.00071 * 30/31)$ ≒ 1.00069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비 교 항 목	주택지대	·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접근조건: 교통시설 접근성, 상가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 접근성 ·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 상태 ·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상업지대	·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 상태 ·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공업지대	·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 획지조건: 면적, 형상, 고저 등 ·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농경지대	· 접근조건: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 · 자연조건: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등 · 획지조건: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등 ·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임야지대	·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 자연조건: 일조, 지세, 방위, 토양, 토질 등 ·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비교내용
1	A	-	1.10	1.35	-	1.00	1.00	1.485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 우세, 자연조건(지세 등) 우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우세함.
2	B	-	0.86	1.10	-	1.00	1.00	0.946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접근성 등) 열세, 자연조건(지세 등) 우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열세함.
3	B	-	0.95	0.70	-	1.00	1.00	0.665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접근성 등) 열세, 자연조건(지세 등) 열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열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대법원판례(2004.05.14. 선고 2003다38207, 1998.7.10. 선고 98두6067, 1993.9.10. 선고 92누16300 등),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

$$\frac{\text{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text{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비교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근거리에 위치하는 <기호(1)은 평가1, 기호(2,3)은 평가4>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 HUB),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KAIS)]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면적 (㎡)	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비 고
평가1	근흥면 마금리 1341-*	임야	계획관리	5,608.0	53,000	법원경매	2023-02-14	-
평가2	근흥면 마금리 1332-*	임야	계획관리	9,577.0	45,000	공매 (국·공유 재산)	2024-04-15	평균단가
평가3	남면 몽산리 245-*	임야	계획관리	3,421.0	69,000	담보	2025-08-12	-
평가4	남면 몽산리 597-*	임야	계획관리	1,259.0	80,000	담보	2025-09-15	-
거래1	근흥면 용신리 248-*	임야	계획관리, 보전관리	1,448.00	62,154	거래사례	2022-02-17	-
거래2	근흥면 안기리 732-*	임야	계획관리	1,653.00	42,347	거래사례	2023-02-07	-
거래3	남면 신장리 15-4*	임야	계획관리	1,317.00	99,468	거래사례	2022-03-03	-
거래4	남면 신온리 124-1*	임야	계획관리	1,653.00	78,644	거래사례	2022-06-1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보정치의 산정

구 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 (원/㎡)						
비교사례(평가1)		53,000	1.01608	1.000	0.585	31,503	2.601	
비교표준지(A)		12,100	1.00069	-	-	12,108		
산 정 내 역	시점수정	충청남도 태안군 계획관리지역 (2023.2.14.~ 2026.01.30.) :1.01608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0.90	0.65	-	1.00	1.00	0.585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열세이며, 자연조건(지세,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열세이며,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구 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 (원/㎡)						
비교사례(평가4)		80,000	1.00315	1.000	1.170	93,894	2.182	
비교표준지(B)		43,000	1.00069	-	-	43,029		
산 정 내 역	시점수정	충청남도 태안군 계획관리지역 (2025.9.15.~ 2026.01.30.) : 1.00315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	1.30	0.90	-	1.00	1.00	1.170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및 상태 등) 우세이며, 자연조건(지세,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열세이며,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적용 보정치	
상기와 같이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과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산된 격차율과 최근의 지가동향, 인근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용 보정치를 결정함.	표준지 A	2.60
	표준지 B	2.18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2,100	1.00069	1.000	1.485	2.60	46,750	47,000
2	43,000	1.00069	1.000	0.946	2.18	88,739	89,000
3	43,000	1.00069	1.000	0.665	2.18	62,380	6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가. 감정평가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나.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 < 기호(1)은 거래1, 기호(2,3)은 거래3 >을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거래 시점	거래가액 (토지단가)	용도 지역	비 고
거래1	근흥면 웅신리 248-*	1,448	임야	2022.02.17	90,000,000원 (@62,154원/㎡)	계획관리	-
거래3	남면 신장리 15-44	1,317	임야	2022.03.03	131,000,000원 (@99,468원/㎡)	계획관리	-

다.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

(1)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지역의 경우 거래일자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2)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 사례<거래1> < 충청남도 태안군 계획관리지역 >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2.17 ~ 2026.01.30	3.243%	충청남도 태안군 (22.02.17~26.01.30) (계획관리) 2022.02.01 ~ 2022.02.28 : 0.235 2022.03.01 ~ 2022.03.31 : 0.237 2022.04.01 ~ 2022.04.30 : 0.232 2022.05.01 ~ 2022.05.31 : 0.232 2022.06.01 ~ 2022.06.30 : 0.226 2022.07.01 ~ 2022.07.31 : 0.197 2022.08.01 ~ 2022.08.31 : 0.151 2022.09.01 ~ 2022.09.30 : 0.134 2022.10.01 ~ 2022.10.31 : 0.058 2022.11.01 ~ 2022.11.30 : 0.029 2022.12.01 ~ 2022.12.31 : 0.060 2023.01.01 ~ 2023.12.31 : 0.147 2024.01.01 ~ 2024.12.31 : 0.591 2025.01.01 ~ 2025.12.31 : 0.734 2025.12.01 ~ 2025.12.31 : 0.071 $(1 + 0.00235 * 12/28) * (1 + 0.00237) * (1 + 0.00232) * (1 + 0.00232) * (1 + 0.00226) * (1 + 0.00197) * (1 + 0.00151) * (1 + 0.00134) * (1 + 0.00058) * (1 + 0.00029) * (1 + 0.00060) * (1 + 0.00147) * (1 + 0.00591) * (1 + 0.00734) * (1 + 0.00071 * 30/31)$ ≈ 1.0324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사례<거래3> < 충청남도 태안군 계획관리지역 >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3.03 ~ 2026.01.30	3.123%	충청남도 태안군 (22.03.03~26.01.30) (계획관리) 2022.03.01 ~ 2022.03.31 : 0.237 2022.04.01 ~ 2022.04.30 : 0.232 2022.05.01 ~ 2022.05.31 : 0.232 2022.06.01 ~ 2022.06.30 : 0.226 2022.07.01 ~ 2022.07.31 : 0.197 2022.08.01 ~ 2022.08.31 : 0.151 2022.09.01 ~ 2022.09.30 : 0.134 2022.10.01 ~ 2022.10.31 : 0.058 2022.11.01 ~ 2022.11.30 : 0.029 2022.12.01 ~ 2022.12.31 : 0.060 2023.01.01 ~ 2023.12.31 : 0.147 2024.01.01 ~ 2024.12.31 : 0.591 2025.01.01 ~ 2025.12.31 : 0.734 2025.12.01 ~ 2025.12.31 : 0.071 $(1 + 0.00237 \times 29/31) \times (1 + 0.00232) \times$ $(1 + 0.00232) \times (1 + 0.00226) \times (1 +$ $0.00197) \times (1 + 0.00151) \times (1 + 0.00134$ $) \times (1 + 0.00058) \times (1 + 0.00029) \times (1$ $+ 0.00060) \times (1 + 0.00147) \times (1 +$ $0.00591) \times (1 + 0.00734) \times (1 + 0.00071$ $\times 30/31)$ ≈ 1.03123

마.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대상 토지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비교내용
1	거래1	-	0.80	0.85	-	1.05	1.00	0.714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열세, 자연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열세,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우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열세함.
2	거래3	-	0.96	0.90	-	1.00	1.00	0.864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접근성 등)열세, 자연조건(지세 등) 열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열세함.
3	거래3	-	1.05	0.57	-	1.00	1.00	0.599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접근성 등) 우세, 자연조건(지세 등) 열세, 제반개별요인 고려시 전체적으로 열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62,154	1.000	1.03243	1.000	0.714	45,817	46,000
2	99,468	1.000	1.03123	1.000	0.864	88,624	89,000
3	99,468	1.000	1.03123	1.000	0.599	61,442	6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산가액 조정 관련 사항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구 분		토지단가(원/㎡)	토지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공시 지가 기준 법	1	47,000	733.0	34,451,000	-
	2	89,000	1,127.0	100,303,000	-
	3	62,000	1,068.0	66,216,000	-
	소 계		2,928.0	200,970,000	
거래 사례 비교 법	1	46,000	733.0	33,718,000	-
	2	89,000	1,127.0	100,303,000	-
	3	61,000	1,068.0	65,148,000	-
	소 계		2,928.0	199,169,000	

나.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토지 일련번호	토지단가(원/㎡)	토지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47,000	733.00	34,451,000	-
2	89,000	1,127.00	100,303,000	-
3	62,000	1,068.00	66,216,000	-
합 계		2,928.00	200,97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제반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구 분	사정면적(㎡)	단 가 (원/㎡)	감정평가액 (원)
토지 감정평가액	2,928.00	-	200,970,000
감정평가액 결정(총액)			200,970,0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232-6	임야	계획관리지역	733	733	47,000	34,451,000	
2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628-12	임야	계획관리지역	1,127	1,127	89,000	100,303,000	
3	"	628-18	임야	계획관리지역	1,068	1,068	62,000	66,216,000	
합 계								₩200,97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 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적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기호(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소재 '마금2리다목적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기호(2,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소재 '몽산포항'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2)은 본건 인근까지 기호(3)은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지세

기호(1) 완경사지 유사 장방형 토지임.

기호(2) 완경사지 유사 사다리형 토지임.

기호(3)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임.

4. 이용상황

기호(1) :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남동측 일부는 대체로 평탄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3) :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 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5. 접면도로상황

기호(1,2)는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3)은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젓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3)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임.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

9.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232-6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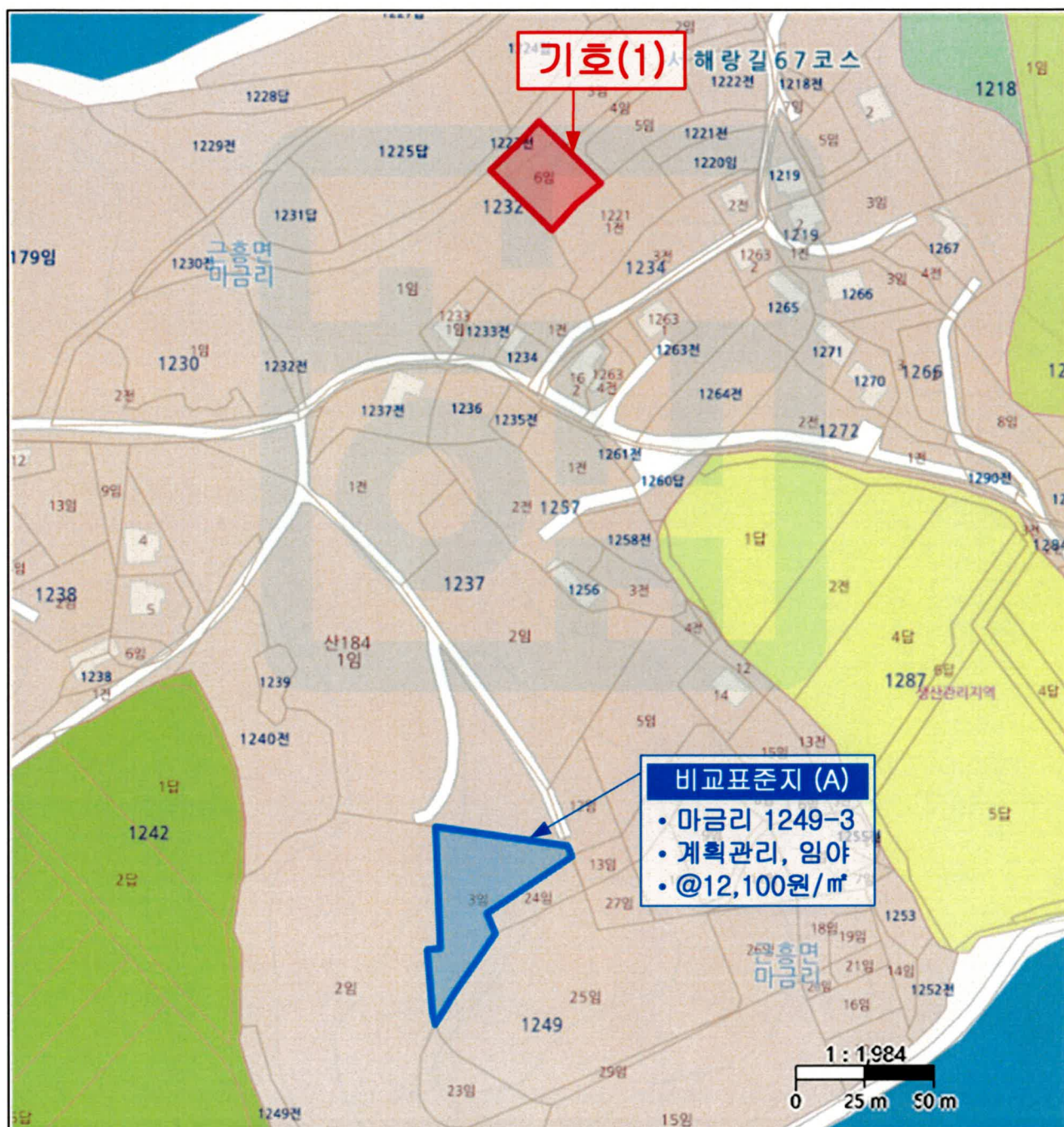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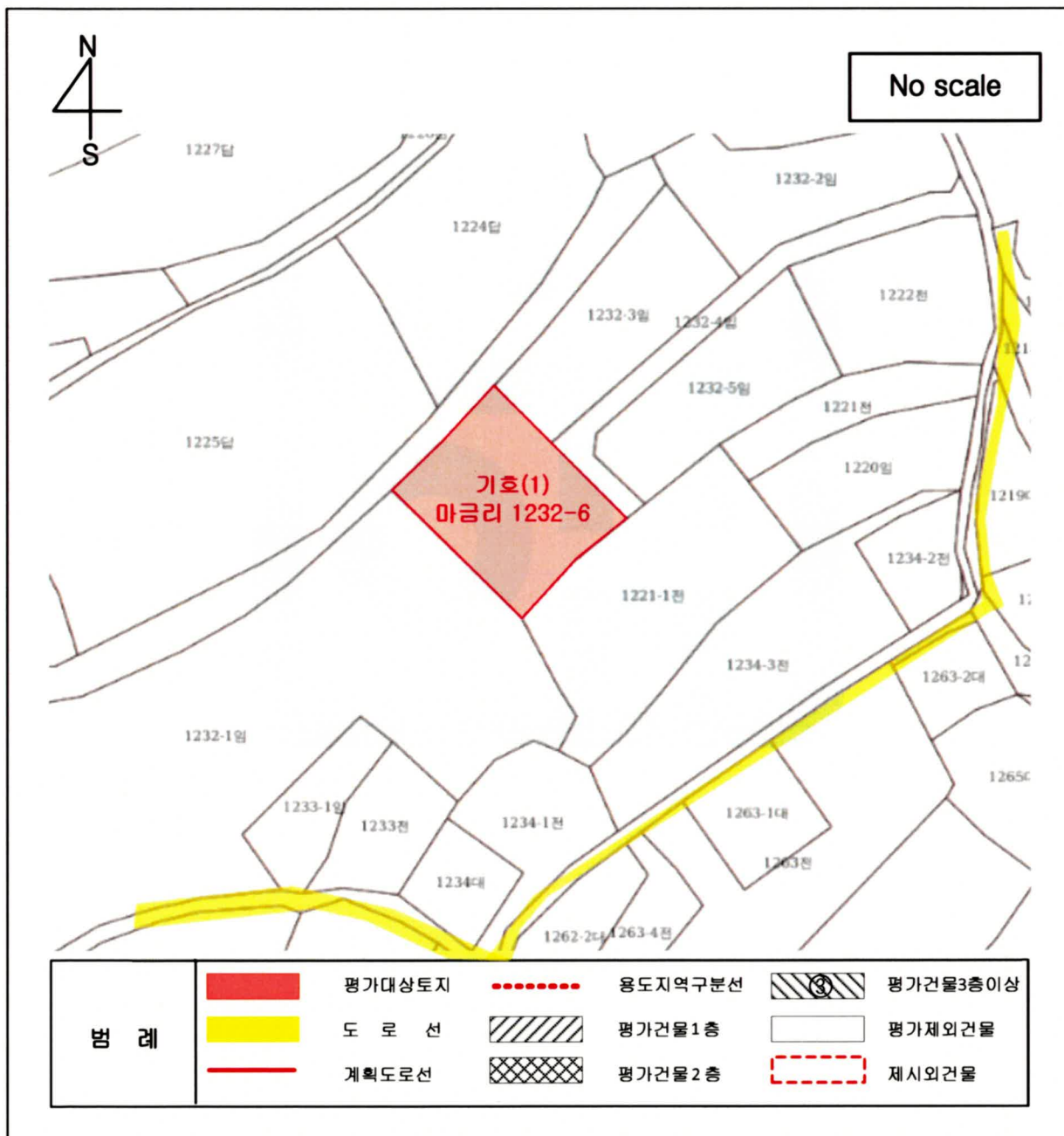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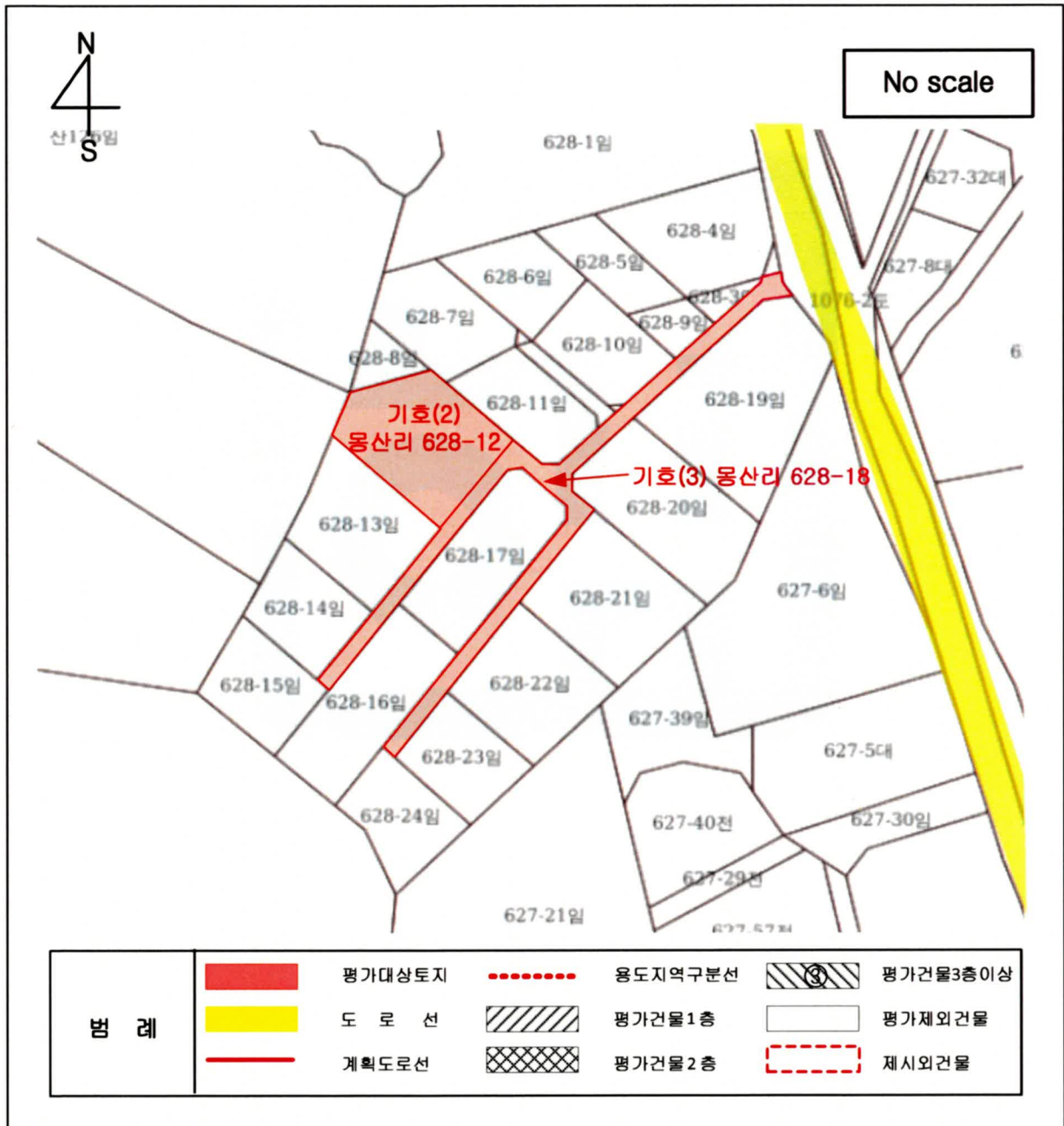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232-6 외



지 적 도



지 적 도



사 진 용 지



기호(1) 남측 전경



기호(1) 북측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2) 동측 전경



기호(2) 북서측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3) 북동측 전경



기호(3) 내부 전경